



행 정 자 치 부



수신자 부천시장 (소사구보건소장)

(경유)

제목 보건소장 의료업무수당 지급관련 회신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,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.

2. 질의요지

○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이 보건지도업무와 부정기적으로 의료업무를 수행한 경우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

3. 회신내용

○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별표9) 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의 의료업무수당은 의무직렬공무원(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등 포함)으로서 「의료법」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의료와 보건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따라서,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무직렬 보건소장의 경우 의료와 보건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. 끝.

행정자치부장관

협조자

시행	지방공무원제도팀-720 (20060210.)	접수	소사구보건소-2212 (2006.02.13.)
우	서울 종로구 세종로 77-6 정부중앙청사 1404호		/www.mogaha.go.kr
전화	02)2100-3790	전송	02)2100-4228 / kwak1499@mogaha.go.kr
			/ 비공개(2)